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8-21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표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농산물 표준규격

2008년 12월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규격품”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2. “포장규격”이라 함은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
3. “등급규격”이라 함은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수량, 크기, 선택, 신선도, 건조도, 결점과, 성분함량 또는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거래단위”라 함은 농산물의 거래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
5. “포장치수”라 함은 포장재 바깥쪽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6. “겉포장”이라 함은 산물 또는 속포장한 농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
7. “속포장”이라 함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
8. “포장재료”라 함은 농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P.P, P.E, 종이 등을 말한다.

제3조(거래단위) ①농산물의 표준거래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5kg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포장치수) ①농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A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
 2. 별표 2에서 정하는 농산물 포장재별 포장치수
 3. T-11형 파렛트(1,100×1,100mm)의 평면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것
- ② 골판지 상자의 높이는 해당 농산물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하고, 화훼류 중 절화류의 골판지 상자의 높이는 300mm 이내로 한다.

제5조(포장치수의 허용범위) ①골판지 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pm 2.5\%$ 로 한다.

- ②그물망, 직물체포대(P.P대), 폴리에틸렌대(P.E대)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길이의 $\pm 10\%$, 너비의 $\pm 10\text{mm}$,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너비의 $\pm 5\text{mm}$ 로 한다.
- ③플라스틱상자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각각 길이·너비·높이의 $\pm 3\text{mm}$ 로 한다.
- ④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포장방법) 포장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개방형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적재하는데 용이하여야 한다.

제8조(포장설계) 골판지 상자의 포장설계는 KS A 1003(골판지 상자형식)에 따른다.

제9조(표시방법)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은 별표4에 따른다.

제10조(등급규격) 농산물 종류별 등급규격은 별표5와 같다.

제11조(표준규격의 특례)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 품목 또는 품종의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품위계측·감정방법) ①등급규격의 항목별 품위 계측 및 감정은 별표6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농산물 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을 준용한다.

- ②계측에 사용하는 표준체의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농산물 검사용 기계기구의 규격 및 관리요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6-30호(2006. 12. 12.)에 의해 표준규격품으로 생산·출하된 농산물은 이 고시에 의한 표준규격품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6-30호의 농산물 표준규격은 폐지한다.

[별표 1]

농산물의 표준거래 단위(제3조 관련)

1. 5kg미만 표준거래 단위 :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2. 5kg이상 표준거래 단위 : 다음과 같음

종 류	품 목	표 준 거 래 단 위
과 실 류	사과, 배, 감귤	5kg, 7.5kg, 10kg, 15kg
	복숭아, 매실, 단감, 감(홍시), 뽕은 감, 자두, 살구, 모과	5kg, 10kg, 15kg
	포 도	5kg
	금감, 석류	5kg, 10kg
	유 자	5kg, 8kg, 10kg, 100과
	참다래	5kg, 6kg, 10kg
	양앵두(버찌)	5kg, 10kg, 12kg
	앵 두	8kg
채 소 류	마른고추	6kg, 12kg, 15kg
	고 추	5kg, 10kg, 20kg
	오 이	10kg, 15kg, 20kg, 50개, 100개
	호 박	8kg, 10kg, 10~28개
	단호박	6kg, 8kg, 10kg, 5~10개
	가 지	5kg, 8~10kg, 50개
	토마토	5kg, 7.5kg, 10kg, 15kg
	방울토마토, 피망	5kg, 10kg
	참 외	5kg, 10kg, 15kg, 20kg
	딸 기	8kg
	수 박	5~22kg, 1~5개
	조롱수박	5~6kg, 2~5개
	메 론	5kg, 8kg, 2~10개
	꽃옥수수	10kg, 15kg, 30개, 40개, 50개
	꽃완두콩	8kg, 20kg
	꽃 콩	15kg, 20kg

종 류	품 목	표 준 거 래 단 위
채 소 류	양 과	5kg, 10kg, 15kg, 20kg
	마 늘	5kg, 10kg, 15kg, 50개, 100개
	간마늘, 마늘종	5kg, 10kg, 20kg
	대파, 쪽파	10kg
	무	8~12kg, 15kg, 18~20kg, 5~12개
	알타리무	5kg, 10kg
	결구배추, 양배추	2~6포기
	당 근	10kg, 15kg, 20kg
	시금치, 들깻잎	8kg, 10kg, 15kg
	결구상추	8kg
	부 추	7.5kg, 10kg, 15kg, 20kg
	마, 생강, 우엉,	10kg, 20kg
	연 근	5kg, 15kg, 20kg
	미나리	5kg, 10kg, 15kg
	고구마순	10kg, 15kg, 20kg
	쭈갓, 양미나리(셀러리), 케일	10kg
	붉은양배추(루비볼)	14~16kg, 18~20kg
	녹색꽃양배추(브록콜리), 고들빼기, 머위, 달래	8kg, 10kg
	꽃양배추(칼리플라워)	8kg, 10kg, 12kg
	신립초	15kg
갓	10kg, 12kg, 15kg, 20kg	
콩나물	6kg, 8kg, 9kg, 10kg, 15kg	
서 류	감 자	5kg, 8kg, 10kg, 15kg, 20kg
	고구마	5kg, 8kg, 10kg, 15kg
특 작 류	참 깨, 피땅콩	20kg
	알땅콩	12kg, 15kg, 18kg, 20kg
	들 깨	12kg
	수 삼	10kg, 15kg, 20kg

종 류	품 목	표 준 거 래 단 위
버 섯 류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6kg
	팽이버섯	5kg
	영지버섯	5kg, 10kg
곡 류	쌀, 잡쌀, 현미, 보리쌀, 눌린보리쌀, 할매, 좁쌀, 울무쌀, 콩, 팥, 녹두, 수수쌀, 기장쌀, 메밀	10kg, 20kg
	옥수수(팝콘용)	15kg, 20kg
	옥수수쌀	12kg, 20kg
화 훼 류	국 화	300~800본
	카네이션, 석죽	300~1,000본
	장 미	200~700본
	백 합	200~600본
	글라디올러스, 극락조화	200~300본
	튜올립, 아이리스, 리아트리스, 공작초	400~500본
	거베라, 해바라기	300~400본
	프리지아, 스타티스	350~400본
	금어초, 칼라, 리시안시스	300~350본
	안개꽃	1,000~2,000본
	스토크	250~300본
	다알리아	350~450본
	알스트로메리아	150~300본
안스리움	20~50본	

농산물표준규격
수 삼

[규격번호 : 504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재배·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4년근 이상의 수삼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무게 구분표[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이하인 것. 단, 무게구분표의 해당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 ② 무게 : 무게 구분표[표 1]에서 「특대」인 것
- ③ 모양 : 수삼의 고유 형태인 머리, 몸통, 다리의 모양을 갖춘 것
- ④ 육질 : 조직이 치밀하고 탄력이 있는 것
- ⑤ 색택 : 표피의 색이 연한 황색 또는 황백색인 것
- ⑥ 손질
 - 수삼 : 흙 등 이물질이 적당히 제거된 것
 - 세척수삼 : 흙 등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것
- ⑦ 신선도 : 수확당시 수준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 ⑧ 중결점 : 없는 것
- ⑨ 경결점 : 5% 이하인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무게 구분표[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5%이하인 것
- ② 무게 : 무게 구분표[표 1]에서 「중」 이상인 것
- ③ 모양 : 수삼의 고유 형태인 머리, 몸통, 다리의 모양을 갖춘 것
- ④ 육질 : 조직이 치밀하고 탄력이 있는 것
- ⑤ 색택 : 표피의 색이 연한 황색 또는 황백색인 것
- ⑥ 손질
 - 수삼 : 흙 등 이물질이 적당히 제거된 것
 - 세척수삼 : 흙 등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것
- ⑦ 신선도 : 수확당시 수준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 ⑧ 중결점 : 없는 것
- ⑨ 경결점 : 10%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무게 구분표[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30% 이하인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육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색택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손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⑦ 신선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⑧ 중결점 : 10%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 ⑨ 경결점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중결점은 은피삼, 주름삼, 결빙된 삼, 눈(牙)이 완전히 개열된 삼, 상해, 충해, 적변삼, 균열삼 등으로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현저한 것을 말한다.
- ② 경결점은 다음의 것으로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경미한 것을 말한다.
 - ㉠ 상해·충해 : 피해 정도가 몸통면적의 5% 이하인 것
 - ㉡ 적변삼 : 표피가 몸통면적의 5% 이하로 붉게 변한 것
 - ㉢ 균열삼 : 균열의 길이가 1cm 이하인 것
 - ㉣ 난발삼 : 몸통이 거의 없고 뿌리가 수평으로 발달한 것(“상” 이하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표 1] 무게 구분

구분 \ 호 칭	특대	대	중	소
개체(1뿌리)당 무게(g)	94 이상	68 이상 94 미만	50 이상 68 미만	50 미만
750g당 뿌리수	8 이하	9~11	12~15	16 이상

※ 30g 미만은 “특소” 로 표시할 수 있다.